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29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박 정·이용우·허 영

박용갑 • 임오경 • 김태선

어기구 · 김정호 · 안호영

소병훈 · 김성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음.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법률 제 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불건전한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6항제7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경우
-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투자 매매업 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

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①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 지 급채무와 위탁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4제1항 중 "참여자"를 "참여자와 배출권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자"를 "참여자 및 배출권거래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및 배출권 거래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참여자" 를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감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제2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4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할당대상업체는 과징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 또는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권의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누구든지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u>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이익을</u>
	<u>얻게 할 목적으로 배출권의 시</u>
	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	
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22조
	의3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거
	<u> 래를 위탁한 시장 참여자(이하</u>
	"위탁자"라 한다)의 배출권을
	배출권등록부에 최초로 등록하
	는 경우 거래계정의 명의와 관
	계없이 위탁자가 거래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 ① ~ ⑤ (생 략)
-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 렁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다.
- 1. ~ 6. (생략)
-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지 아니할 것 가. ~ 라. (생 략) <u><신 설></u>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
청은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에 대한 수요
의 급증 등으로 단기간에 해당
시장 참여자의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
해되거나 불건전한 거래가 의
심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계정 등록 요구를 거절할
<u>수 있다.</u>

① ~ ⑤ (현행과 같음)	
---------------	---	--

(P)	 			 	 	_
	 	 	 	 	 	_

1. ~ 6. (현행과 같음)

7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배출권 및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 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u>마.</u> (생 략) ⑦・⑧ (생 략) <신 설>

<신 설>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할 목 적으로 배출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 위

바. (현행 마목과 같음)

- ⑦·⑧ (현행과 같음)
- ⑨ 누구든지 제6항제6호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해당 예탁금을 예치한 배출권거래증개회사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별도로고시한 경우 외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증권금융회사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된 예탁금을 그 시장 참여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 설>

-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산결의를 한 경우
-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의 투자매매업 또는 제6조제1 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의 전부 양도 또는 전부 폐지의 승인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
-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 용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금 지급에이용하게할 목적으로 제공할수 있다.

<신 설>

<신 설>

⑨·⑩ (생 략)

제22조의4(감독·검사) ① 주무관 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 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u>참여자</u> 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 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 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

② 환경부장관, 증권금융회사,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0항 에 따른 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0항에 따라 증권금융회 사가 예탁금을 시장 참여자에 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배출권거 래중개회사에 대한 증권금융회 사의 예탁금 지급채무와 위탁 자에 대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의 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4)·(5) (현행 제9항 및 제10항 과 같음)

ll 22조의4(감독·검사) ①	<u> </u>
	<u>참여자</u>
와 배출권거래소	
②	

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 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 속 직원에게 <u>배출권거래중개회</u> 산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

<u>참여자</u>	및 배출권거래스	<u>_</u>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 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 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및 거래에 관하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감독원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u>(5)</u>	
	· <u>배출권거래중개회</u>
<u>사</u>	및 배출권 거래소
	ગંતીનો છો હો

⑥ -----참여자 및 배

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조 (생 략)
 -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신 설>

<u>4.·5.</u> (생략)

⑥ ~ ⑧ (생 략)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ㅈ (생 략)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 줄권 거래소</u>
데24조의2(검증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5
<u>মা4ই</u>
1. ~ 3. (현행과 같음)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
를 수행한 경우
<u>5. · 6.</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세24조의3(검증심사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187 E d) (187 E d)
(4)

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4. (생략)

⑤ (생략)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 3. 자격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검증업무 <u>를</u> 수행한 경우
-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협회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 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단서 신설>

- 1. 2. (생략)
- ②・③ (생략)